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4. 11.(목) 총 3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물류정책과	담당 자	·과장 이성훈, 사무관 이충수, 주무관 신성일 ·☎ (044) 201-3993, 3997	
보 도 일 시		2019년 4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4. 1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차 합동점검...71건 적발 의심거래 주유소 137곳 합동점검...주유소 12곳 · 화물차 59대 행정처분 예정

(적발사례1) 화물차주 K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H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집에 등유를 넣고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적발사례2) 화물차주 J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K씨와 공모하여 실제로 주유하지 않고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 등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하였다.

○ 이번 합동점검은 2019년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점검하였다.

○ 한편, 지난 1차 합동점검('18.11.26~12.28)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한 바 있다.

□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②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 ③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 ④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7건 등 71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행위》

(단위: 건수)

위 반 행 위	계	차 량	주 유 소
계	71	59	12
외상 후 일괄결제	33	33	-
주유량 부풀리기	16	11	5
타 차량 주유	15	10	5
타 유종 주유	7	5	2

- 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에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관련 조항 신설 '18.8.14, 시행 '18.11.29)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등을 연계하여 부적격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자동 지급정지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충수 사무관(☎ 044-201-39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정의

- 에너지 세제 개편('01)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현재 유류세에서 '01년 유류세 차액)을 영세 차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

□ 유가보조금 지급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군수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경유)

- 345.54원/ℓ* (현재 유류세 - '01.6월 유류세)

* 유류세 한시적 인하('18.11.6~'19.5.6)에 따라 지급단가 변경 : 266.58원/ℓ

□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연도	'13	'14	'15	'16	'17
합계	24,335	24,193	24,212	25,077	26,126
버스	3,038	3,037	3,059	3,202	3,533
택시	5,197	5,153	4,805	4,733	4,619
화물	16,100	16,003	16,348	17,143	17,974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현황

('17.12.31. 기준)

구분	버 스	택 시	화물차
차량대수	69,999	251,695	394,960

□ 유가보조금 재원 : 지방세법 제136조(주행 자동차세)

□ 유가보조금 관련법규

구 분	지 급 근 거	비고
노선·전세버스 및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시행령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참고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14~'17)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노선버스	발생건수	3	2	3	8
	부정수급액	6	504	35	8
택시	발생건수	290	366	664	760
	부정수급액	306	47	48	26
화물	발생건수	3,944	2,432	2,805	2,893
	부정수급액	3,728	5,030	5,650	6,369

□ 화물자동차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부정수급건	28,542	841	756	896	1,245	3,789	4,739	4,202	3,944	2,432	2,805	2,893
부정수급액	37,785	761	1,124	868	2,071	4,588	3,402	4,194	3,728	5,030	5,650	6,369

□ 화물자동차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 ('14~'17)

(단위 : 건, 백만원)

유형별	2014		2015		2016		2017	
	적발건수	결정액	적발건수	결정액	적발건수	결정액	적발건수	결정액
합계	3,944	3,728	2,432	5,030	2,805	5,650	2,893	6,369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1,126	1,727	507	1,025	631	1,639	269	1,595
외상 후 장부 기입, 차후에 카드로 일괄결제	1,377	440	418	204	445	430	834	605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결제	100	173	38	81	90	90	86	44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102	198	106	190	181	267	205	89
유사 경유(타품목, 등유, 휘발유 등) 주유 후 결제	145	419	152	747	84	262	117	112
이동판매(탱크로리 등)하는 유류 구매 후 결제	102	441	84	983	51	669	4	3
법령위반으로 처분(사업정지, 운행정지 등)이후 결제, 의무보험미가입	397	136	855	199	820	545	1,110	320
기타(화물업무 종사자격 미소유자, 불법구조변경 등)	595	194	272	1,601	503	1,748	268	3,601